

지정번호 제 호

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 또는 단체 명칭:
2. 대 표 자:
3. 교육훈련 소재지:
4. 교육훈련 내용:

「기계설비법」 제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 직인